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9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2024. 3. 1.자 초등학교 1개교(서울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서울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 2024. 2. 29.자 고등학교 2개교(도봉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 분교 1개교(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 폐지

2. 주요 내용

가. 초등학교 구분 및 위치 (안 별표 1)

신설: 1개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강남구) : 서울개현초등학교

나. 고등학교 명칭 (안 별표 3)

폐지: 3개교

- 북부교육지원청(도봉구) : 도봉고등학교
- 성동광진교육지원청(성동구) : 성수공업고등학교
- 성동광진교육지원청(성동구) :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

다. 유치원 명칭 (안 별표 7)

신설: 1개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강남구) : 서울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6

- 1)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별첨 2)

다. 협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입법예고(2023. 8. 31. ~ 2023. 9. 22.) 결과: 의견 없음(별첨 3)
-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일부수용(별첨 4, 4-1)
- 학생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절차에 대한 회신 요청사항 확인 완료)
(별첨 5, 5-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55교)” 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56교)” 로, 자치구명란 중 “강남구(33교)” 를 “강남구(34교)” 로 하고, 명칭란 중 “서울자곡초등학교” 란 다음에 “서울개현초등학교” 란을, 위치란 중 “강남구 자곡로 150” 다음에 “강남구 선릉로 15” 를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56교)	강남구 (34교)	서울개현초등학교	강남구 선릉로 15

별표 3 구분란 중 “본청(118교)” 을 “본청(115교)” 로, 교육지원청란 중 “북부(12교)” 를 “북부(11교)” 로, 자치구명란 중 “도봉구(6교)” 를 “도봉구(5교)” 로 하고, 명칭란 중 “도봉고등학교” 를 삭제하며, 교육지원청란 중 “성동광진(11교)” 를 “성동광진(9교)” 로, 자치구명란 중 “성동구(8교)” 를 “성동구(6교)” 로 하고, 명칭란 중 “성수공업고등학교” 와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 를 삭제한다.

별표 7 구분란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29교)” 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30교)” 로, 자치구명란 중 “강남구(18교)” 를 “강남구(19교)” 로 하고, 명칭란 중 “서울영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 다음에 “서울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을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30교)	강남구 (19교)	서울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남구 영동대로4길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봉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의 존속기한은 2024. 2. 29.까지로 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초등학교 구분 및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 colspan="2">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강남서초 교육지원청 (55교)</td> <td rowspan="3">강남구 (33교)</td> <td><생략></td> <td colspan="2"></td> </tr> <tr> <td>서울자곡초등학교</td> <td colspan="2">강남구 자곡로 150</td> </tr> <tr> <td><신설></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55교)	강남구 (33교)	<생략>			서울자곡초등학교	강남구 자곡로 150		<신설>			<p>[별표 1] 초등학교 구분 및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 colspan="2">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강남서초 교육지원청 (56교)</td> <td rowspan="3">강남구 (34교)</td> <td><현행과 같음></td> <td colspan="2"></td> </tr> <tr> <td>서울자곡초등학교</td> <td colspan="2">강남구 자곡로 150</td> </tr> <tr> <td>서울개현초등학교</td> <td colspan="2">강남구 선릉로 15</td> </tr> </tbody> </table>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56교)	강남구 (34교)	<현행과 같음>			서울자곡초등학교	강남구 자곡로 150		서울개현초등학교	강남구 선릉로 15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55교)	강남구 (33교)	<생략>																																																												
		서울자곡초등학교	강남구 자곡로 150																																																											
		<신설>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56교)	강남구 (34교)	<현행과 같음>																																																												
		서울자곡초등학교	강남구 자곡로 150																																																											
		서울개현초등학교	강남구 선릉로 15																																																											
<p>[별표 3] 고등학교 명칭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육지원청</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본청 (118교)</td> <td rowspan="3">북부 (12교)</td> <td rowspan="3">도봉구 (6교)</td> <td><생략></td> <td></td> </tr> <tr> <td>도봉고등학교</td> <td>도봉구 도봉산길 27</td> </tr> <tr> <td><생략></td> <td></td> </tr> <tr> <td rowspan="3">성동광진 (11교)</td> <td rowspan="3">성동구 (8교)</td> <td><생략></td> <td></td> </tr> <tr> <td>성수공업고등학교</td> <td>성동구 독성로 365</td> </tr> <tr> <td><생략></td> <td></td> </tr> <tr> <td></td> <td></td> <td>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td> <td>성동구 왕십리로 199</td> </tr> </tbody> </table>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본청 (118교)	북부 (12교)	도봉구 (6교)	<생략>		도봉고등학교	도봉구 도봉산길 27	<생략>		성동광진 (11교)	성동구 (8교)	<생략>		성수공업고등학교	성동구 독성로 365	<생략>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성동구 왕십리로 199	<p>[별표 3] 고등학교 명칭(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육지원청</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본청 (115교)</td> <td rowspan="3">북부 (11교)</td> <td rowspan="3">도봉구 (5교)</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삭제></td> <td></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rowspan="3">성동광진 (9교)</td> <td rowspan="3">성동구 (6교)</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삭제></td> <td></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삭제></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본청 (115교)	북부 (11교)	도봉구 (5교)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성동광진 (9교)	성동구 (6교)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본청 (118교)	북부 (12교)	도봉구 (6교)	<생략>																																																											
			도봉고등학교	도봉구 도봉산길 27																																																										
			<생략>																																																											
	성동광진 (11교)	성동구 (8교)	<생략>																																																											
			성수공업고등학교	성동구 독성로 365																																																										
			<생략>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성동구 왕십리로 199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본청 (115교)	북부 (11교)	도봉구 (5교)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성동광진 (9교)	성동구 (6교)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p>[별표 7] 유치원 명칭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 colspan="2">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강남서초 교육지원청 (29교)</td> <td rowspan="3">강남구 (18교)</td> <td><생략></td> <td colspan="2"></td> </tr> <tr> <td>서울영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 <td colspan="2">강남구 일원로 21</td> </tr> <tr> <td><신설></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29교)	강남구 (18교)	<생략>			서울영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남구 일원로 21		<신설>			<p>[별표 7] 유치원 명칭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 colspan="2">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강남서초 교육지원청 (30교)</td> <td rowspan="3">강남구 (19교)</td> <td><생략></td> <td colspan="2"></td> </tr> <tr> <td>서울영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 <td colspan="2">강남구 일원로 21</td> </tr> <tr> <td>서울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 <td colspan="2">강남구 영동대로4길 20</td> </tr> </tbody> </table>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30교)	강남구 (19교)	<생략>			서울영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남구 일원로 21		서울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남구 영동대로4길 20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29교)	강남구 (18교)	<생략>																																																												
		서울영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남구 일원로 21																																																											
		<신설>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30교)	강남구 (19교)	<생략>																																																												
		서울영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남구 일원로 21																																																											
		서울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남구 영동대로4길 20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기관 신설 및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현판 등 제작·교체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학교의 명칭 및 주소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판 등 제작·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

※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절차 전 학교 신설·폐지·이전 등을 위한 소요금액 예산심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금액은 [참고] 문서 참조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지빈(02-2282-8358)

【별첨 2-1】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소요금액 (예산심의 확정액)

(단위: 천원)

연번	학교급	학교명	건설비	토지매입비	기타 (운영비 등)	합계	비고
1	유	서울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3,638,451	-	-	3,638,451	신설
2	초	서울개현초등학교	34,763,030	-	758,632	35,521,662	신설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 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이하 생략)	

【별첨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서울교육024		
정책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담당자명	김지빈	전화번호 02-2282-835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학교지원과)	■ 제·개정 목적 학교 신설 및 폐지 등 조례 [별표] 현행화 ■ 성별영향평가 항목 - 3-1. 성별 균형 참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2. 현 제·개정 주요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함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정원/02-3999-546)			
학교지원과장 귀하			

【별첨 4-1】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서울교육024		
정책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담당자명	김지빈	전화번호 02-2282-8358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p>현 제·개정 주요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 <th style="width: 50%;">개선안 (법령 수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 5 조 (위 원 회 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td> <td style="padding: 5px;">제 5 조 (위 원 회 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td> </tr> </tbody> </table>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제 5 조 (위 원 회 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위 원 회 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 제출한 동 조례개정안의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교육위원회 심의 시 서면 의결 조항의 신설이 반려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는 이미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본 조례안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반복적인 규정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나, - 향후 법제담당부서와의 협의 및 법령 해석 자문 등을 통하여 개정 필요시 2024. 9. 1.자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제 5 조 (위 원 회 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위 원 회 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2023년 9월 11일

학교지원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김지빈 (02-2282-8358)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마한얼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일부 개정 (별표1, 별표3, 별표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2024. 3. 1.자 초등학교 1개교(서울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서울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2024. 2. 29.자 고등학교 2개교(도봉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 분교 1개교(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를 폐지함에 따라, 각각 초등학교 구분 및 위치(별표 1), 고등학교 명칭(별표 3), 유치원 명칭(별표 7) 등 기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규정함. - 개정하려는 별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도봉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합학교 지정과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 폐지는 어떤 면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뿌리'와 '소속'이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것이고, 생활환경, 활동, 학습 과정, 교우 관계 등 재학생에게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함. - 이에 담당과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재학생의 의견 청취를 거쳤는지 확인 회신을 요청함. 					원안동의 (절차에 대한 확인 회신 요청)

자치법규(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부서 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소속	학교지원과	직급	주무관
			성명	김지빈	전화 번호	02-2282- 8358
소위원회 검토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 고
<p>-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p> <p>- 도봉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합학교 지정과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폐지는 어떤 면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뿌리’와 ‘소속’이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것이고, 생활환경, 활동, 학습 과정, 교우 관계 등 재학생에게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함.</p> <p>- 이에 담당과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재학생의 의견 청취를 거쳤는지 확인 회신을 요청함.</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p>- (도봉고) 2022학년도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인근 자운고와 통폐합 및 특별전학</p> <p>* 학부모 설문 결과 통폐합 (100% 찬성), 희망학교 재배치(97% 찬성), 통폐합 및 재배치 추진 불가 시 2학기 자체 전학(67%)</p> <p>- (성수공고) 2021학년도 학부모 설문조사 및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인근 휘경공고와 통폐합 실시</p> <p>* 재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통폐합 찬성 (92.9%)</p>			

【별첨 6】

관계법규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17. (생략)